

사고기록장치 세부 안내문 (제30조의3제1항 관련)

01 자동차에는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고기록장치는 자동차의 충돌 등 사고 전후 일정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 정보 (주행속도, 제동페달, 가속페달 등의 작동 여부)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사고기록정보는 사고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경고

도어/트렁크/유리창을 열고 닫을 때 신체 일부가 끼이거나 부딪혀 다칠 수 있습니다.



- 도어 또는 트렁크를 열고 닫을 때 손가락이나 머리 등 신체 일부가 끼이거나 부딪혀 골절, 절단과 같이 심각한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안전을 확인한 후 도어 또는 트렁크를 열거나 닫으십시오.
- 트렁크는 일정 위치 이하 또는 이상에서 스스로 내려가거나 올라가므로 얼굴, 머리 등이 부딪히거나 손이 끼이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십시오.
- 유리창을 닫을 때는 탑승자의 손이나 머리가 끼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작동하십시오. 특히 어린이의 머리가 끼이는 경우 질식 등 중상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원터치 유리창 올림 기능이 장착된 차량은 이 기능이 작동 중일 때 유리창이 올라가는 경로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원터치 유리창 끼임 방지 기능이 작동하여 유리창이 미리 설정된 위치로 자동으로 내려가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의 신체 일부가 놓여있는 경우에는 유리창에 일정 이상의 힘(저항)이 가해지지 않아 유리창 끼임 방지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창문을 닫기 전에 탑승자의 안전을 반드시 확인하고 스위치를 작동하십시오.
- 원터치 유리창 올림 기능을 작동하지 않고 유리창을 올리는 경우에는 원터치 유리창 끼임 방지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원터치 유리창 작동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취급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십시오.

[한국소비자원‘비충돌사고(Non-Crash Incident) 저감’경고사항]

▲ 경고

안전벨트 관련 위해우려 용품은 탑승자의 안전을 저해하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전벨트 관련 위해우려 용품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탑승자의 복합 중상 가능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차단클립



안전벨트 스토퍼



놀이방 매트

차단클립 : 버클에 삽입 시 안전벨트가 작용된 것으로 인식되어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등 및 경고음이 미작동

안전벨트 스토퍼 : 안전 벨트에 장착 시 리트랙터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여 안전 벨트 성능저하 발생

놀이방 매트 : 차량 뒷좌석 장착 시 안전벨트 및 카시트 미착용을 유도

국내 교통법규에 따라 모든 도로에서 탑승자 전원이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벨트는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탑승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반드시 당사에서 제공하는 적합한 방법으로 착용하십시오.

[한국소비자원‘안전벨트 관련 위해우려 용품’경고사항]

한국지엠주식회사 차량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취급설명서는 고객님의 차량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행하실 수 있도록 정확한 취급방법을 명기하였습니다.

만약 차량의 운행 및 취급 방법의 미숙지로 인하여 차량이 오작동하는 경우, 고장 및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운행 전 꼭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고객께서 항상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지엠주식회사

보증서

한국지엠주식회사에서 생산하고 판매한 자동차는 자동차 관련 제반 법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되었으므로 취급 설명서에 명시된 점검 및 정비주기와 사용지침에 따라 관리, 사용하시면 차량은 항상 최적의 상태와 최고의 성능으로 안전하게 유지될 것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보증하여 드립니다.

1. 보증의 범위

취급 설명서에 명시된 자동차운행 요령 및 주기점검표에 따라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셔야 하며, 자동차를 구성하는 각 부품이 아래의 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에 의한 고장임이 기술적 분석에 의해 밝혀진 경우 해당 부품을 폐사비용으로 수리 또는 신품이나 당사의 사후관리용 보증부품으로 교환하여 드리며, 다만 비사업용 승용차, 비사업용 소형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소형승합자동차(비사업용은 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을 말함)는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조향장치, 제동장치, 엔진 및 동력 전달장치에 발생한 하자)이 발생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보증하여 드리며, 자동차관리법 제 47조의 2에 따른 자동차교환불보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 2에 따른 자동차교환불보장은 당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최초 자동차 소유자에 한하고, 이후 구매차량의 승계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상 제47조의 2에 따른 교환불보장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2. 보증부품 및 보증기간

보증기간은 신차출고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래한 것을 보증기간의 만료로 간주합니다.

- 1) 차체 및 일반부품 : 36개월 또는 60,000 km
- 2) 엔진 및 동력 전달계통 주요 부품

구분	60개월 또는 100,000 km 보증 사항	36개월 또는 60,000 km 보증 사항
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린더 헤드와 그 내부부품 - 실린더 블럭과 그 내부부품 - 밸브장치와 그 구성부품 - 오일펌프, 워터펌프, 서모스탯 - 배기 매니폴드 - 플라이 휠 - 각종 오일제어 밸브 - 각종 엔진내부 가스켓 및 쌀 - 타이밍 체인 및 관련부품 - 엔진 오일쿨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기 장치를 제외한 엔진 전장품 일체 (알터네이터, 각종 모터류, 각종저항, 케이블, 배선류, 센서, 릴레이, 스위치류) - 냉각장치(라디에이터) - 엔진마운트 - 타이밍벨트, 서지탱크 - 기타(배기관 및 머플러), LPG관련부품 일체
클러치 변속기, 추진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동변속기 - 자동변속기 - 추진축과 관련부품 - 등속 조인트(단, 고무부트는 제외) - 변속기 내부 가스켓 및 쌀 - 변속기 오일쿨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러치 커버, 릴리이스 포크, 스러스트 베어링 - 클러치 및 변속기 조작장치, 변속기 부착 전장품 - 변속기 장착용 브라켓
앞 뒤 차 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동장치 및 액슬하우징 - 액슬축 - 차축내부 가스켓 및 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가.제동.조향장치의 부품일체, 훨허브, 넉클, 볼 조인트 등 앞.뒤 차축 관련부품 - 허브베어링

3) 냉난방장치 보증기간 : 36개월 또는 60,000 km(단, 주행거리 60,000 km 초과시 12개월)

4)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

(1)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관련)

정화용 촉매, 전자제어장치, 매연포집필터,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7년 또는 120,000 km
그 밖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5년 또는 80,000 km



(2) 배출가스 관련부품(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관련)

1. 배출가스 전환장치종

- 산소감지기, 정화용 촉매, 매연포집필터,
선택적환원촉매장치, 요소분사기, 요소분사펌프
및 제어장치, 질소산화물저감촉매, 재생용가열기

2.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종

- EGR밸브, EGR제어용 서모밸브, EGR쿨러

3. 연료증발가스 방지장치종

- 정화조절밸브, 정화조절펌프,
증기저장캐니스터와 필터

4. 블로바이가스 환원장치종

- PCV밸브

5. 2차 공기분사장치종

- 공기펌프, 리드밸브

6. 연료공급장치종

- 전자제어장치, 스토크포지션센서, 대기압센서,
기화기, 혼합기, 연료분사기, 연료압력조절기,
냉각수온센서, 연료펌프, 공회전속도제어장치

7. 정화장치종

- 정화장치의 디스트리뷰터 (다만, 로더 및 캡은
제외)

8.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종

- 촉매 감시장치
- 가열식 촉매 감시장치
- 실화 감시장치
- 증발가스계통 감시장치
- 2차공기 공급계통 감시장치
- 에어컨 계통 감시장치
- 연료계통 감시장치
- 산소센서 감시장치
- 배기관 센서 감시장치
- 배기가스 재순환계통 감시장치

- 블로바이가스 환원계통 감시장치

- 서모스태트 감시장치
- 엔진냉각계통 감시장치
- 저온시동 배출가스 저감기술 감시장치
- 가변밸브타이밍 계통 감시장치
- 직접 오존 저감계통 감시장치
- 기타 감시장치

9. 흡기장치종

- 터보차저, 바이패스밸브, 덕팅, 인터쿨러, 흡기 매니폴드

5) 타이어는 차량에 장착된 타이어 제조회사에서 별도 보증 합니다. 타이어 관련 보증 및 기타 문의 사항은 타이어 제조회사에 문의 바랍니다.

3. 보증에서 제외되는 사항

보증기간 이내 일지라도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보증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정상적인 자동차의 관리를 위한 제반사항 즉, 연료계통 청소, 전차륜 정렬, 휠 밸런스, 엔진튠업, 브레이크 점검 및 조정, 기타 자동차 주기점검표에 의해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점검.
- 2) 자동차운행에 소요되는 일반소모품 즉, 점화플러그, 노즐, 필터류, 고무 부품류, 벨트류, 클러치디스크, 브레이크라이닝, 와이퍼브레이드, 전조등 흡습제, 전구류, 휴즈류, 소모성 배터리류, 유류 등 차량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교환품목.
- 3) 자동차의 성능에 영향을 줄만 하다고 인정되는 변형이나 개조에 의한 고장이나 배출가스 정화장치 관련 부품의 제거, 변형 및 개조에 의한 고장.
- 4) 유연휘발유, 불량휘발유, 불량연료 또는 오염된 연료를 사용하여 발생한 고장이나 결함으로 인정되는 경우.
- 5) 취급설명서에 명시된 차량운행요령 및 주기점검표대로 자동차관리를 실시하지 않아 발생된 고장이나, 이에 대한 점검 및 정비하지 않았음을 폐사가 입증한 경우.
- 6) 적재량 초과, 취급 부주의, 수리지연, 사고 및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의 경우.
- 7) 주행거리계가 고장난 채로 운행되었거나 또는 변조된 것으로 인정되어 정확한 주행거리를 판별할 수 없는 경우.
- 8) 일반적인 품질 및 기능상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관능적인 현상, 즉 가벼운 소음, 진동, 냄새, 가죽부품 사용상의 주름 또는 손상, 외관, 작동 감각등.
- 9) 폐사가 지정하는 정비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제품의 구조, 성능, 기능 등을 개조 또는 변조하여 발생된 고장이나 폐사가 지정한 순정부품 및 유류를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된 고장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단, 제품상의 결함으로 인해 긴급상태에서 실시한 작업은 제외됨)
- 10) 보증수리시 해당 부품대와 기술료를 제외한 간접비용 즉, 교통, 숙박, 운휴 손실 및 제세공과금 등의 제비용.
- 11) 취급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방법과 다른 부적절한 사용, 사양 한도를 초과하는 혹사(자동차 경주, 랠리 등과 같은 가혹한 주행, 엔진의 과회전, 과격재, 승용 정원초과, 하용주행 속도초과 등)에 기인한 고장.

4.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

- (1)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항상 취급설명서 및 보증서의 내용에 따라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2) 부적절한 점검, 정비 및 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각종 구성품의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배출가스 정화장치의 기능을 마비시켜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하므로 취급설명서에 규정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증서의 자동차 운행점검 및 정비기록일지에 수리작업 확인을 받으시고 정기점검 및 정비기록자료 요구시 증거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항상 보관하셔야 합니다.
- (3)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조향장치, 제동장치,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에 하자)이 발생되었을 경우 반드시 폐사가 지정한 정비사업장에 비치된 보증수리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보증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5. 보증수리의 실시

- (1) 본 보증서는 폐사가 판매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신차 출고시 지급되며, 폐사의 날인이 있는 것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2) 보증수리 실시장소는 폐사가 지정한 정비사업장에 한하여 사용부품은 폐사의 순정부품으로 합니다.
- (3) 고객이 보증수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차량과 보증서를 상기 2)항의 정비공장에서 정상근무 중인 보증수리 담당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 (4) 배출가스 관련부품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자동차 제작자의 잘못에 의해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초과될 때에나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때에만 보증수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기 출고된 차량과 동종의 차량에 대해서 제작상 사양변경이 필요한 경우 폐사는 사전 통보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기 출고된 차량에는 사양변경에 따른 추가적용 의무가 없습니다.

7. 보증의 계승

보증기간 내에 자동차의 매매, 기증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잔여 보증기간에 한하여 보증을 계승받을 수 있사오니, 해당 자동차에 대한 보증서도 필히 인수하셔야 합니다.

폐사는 항상 귀하의 차량을 성심껏 보살펴 드릴 것이오니, 귀하의 차량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